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51016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5.10.26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01.14.



정 보 공 개 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유해피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소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양로 1130, 제상가동 제씨2층 제33호 (마두동, 강촌마을6단지아파트)		
대표번호	031-901-0011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youhappy1510@naver.com
전화번호	031-901-0011	팩스번호	031-901-7911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3. 인수·합병 여부
4.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5. 가맹본부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7. 바로 전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2. 가맹사업의 연혁
3. 가맹사업의 업종
4.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수 변동 현황
6. 기타 가맹사업현황
7. 바로 전 가맹점사업자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산정기준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9. 가맹지역본부(지사를 포함한다) 현황
10. 바로 전 사업연도의 광고·판촉지출 내역
11. 가맹금 예치기관
12.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내역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3. 형(刑)의 선고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2. 영업 중의 부담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 구입 및 임차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4. 영업지역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기간, 갱신, 종료 및 수정, 해지 등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오픈 절차
2. 분쟁 해결 절차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3. 경영활동 자문
4. 신용제공 등 내역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별첨서류

[별첨1] 별지 제1호 서식: 가맹금 예치 신청서

[별첨2] 별지 제2호 서식: 가맹희망자 인근의 가맹점사업자현황

[별첨3] 별지 제3호 서식: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영업표지	주 소			
유해피	유해피 심리상담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랑로 1130, 제상가동 제씨2층 제 33호(마두동, 강촌마을6단지아파트)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개인사업자	2015.09.30	김문식	031-901-0011	031-901-7911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525-21-00144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해당없음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해당 가맹사업’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유해피심리상담센터	상담센터 전문점
상 호	유해피심리상담센터 0000점	-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 4103438030000 등록일자 : 2016.01.05
광 고	-	-
그 밖의 영업표지	유해피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3	17,650	11,276	6,373	293,795	42,687	42,687
2022	18,470	7,784	10,686	140,680	20,979	20,946
2021	11,640	7,800	3,839	120,467	18,153	17,834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1)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문식	대표	2015년 09월30일 ~ 현재	대표	회사 업무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해당 없음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 및 등록일자	출원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유해피 심리상담센터	외장, 인테리어, 영업표지	출원일자 2015.04.17 등록일자 2016.01.05	출원번호 4120150018190 등록번호 4103438030000	최남순	2026년 01월 05일

권리범위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범위 이내
------	-------------------

당사는 상기 지식재산권의 소유자로부터 가맹사업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부여 받았습니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 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점을 시작한 날 : 2015-12-14 [가맹본부 대표 배우자의 매장 시작일:2014-07-30]

2. 가맹사업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유해피	유해피심리 상담센터	김문식	2015년 9월 30일 ~2018년 4월2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196, (마두동,강촌마을)
유해피	유해피심리 상담센터	김문식	2018년 4월3일 ~현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30, 제상가동 제씨2층 제33호(마두동, 강촌마을6단지아파트)

3. 가맹사업 업종

영업표지	업종	
유해피심리상담센터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 서비스	심리 상담센터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3.12.31.			2022.12.31.			2021.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0	10	-	4	4	-	4	4	-
서울	2	2	-	1	1	-	1	1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1	1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7	7	-	3	3	-	3	3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최근 3년간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3	4	6	-	-	-	10
2022	4	-	-	-	-	4
2021	3	1	-	-	-	4

6. 해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해당없음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직전년도에 올린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10	483,899	10,463	929,070	18,581	234,343	5,691	8개
서울	2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	-	-	-	-	-	-	-
광주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7	530,549	12,733	929,070	18,581	234,343	5,859	6개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단위:일)
2023	10	994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해당 사항 없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당사에서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광고		(비공개)	97,640	 (비공개)	-	
판촉	-	-	-	-	-	
합계		(비공개)	97,640	 (비공개)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사 가맹본부와 예치계약된 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신한은행	수신상품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03	031-901-1161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가맹본부와 계약한 예치 은행창구에서 예치신청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온라인뱅킹에 의한 예치방법은 가맹금예치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당 가맹본부 상호를 찾아 예치금액을 입력하여 예치하시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예치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위반을 이유로 가맹금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4개월 이내 반환 청구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가맹금 예치제를 실시하므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전기증설, 철거공사, 화장실, 수도공사, 소방시설, 냉난방기기, 냉동냉장기기, 닥트공사, 기타 실외공사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비	11,000	계약체결 후 예치	계약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계약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사유로 계약이 해지	1. 가입비 2. 영업, 운영 노하우, 가맹점운영권 부여 3. 최초가맹점 오픈을 위한 정보, 자료제공 * 계약 해제 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후 반환
교육비	22,000	계약체결 후 예치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
총 계	33,000	-	-	-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종료일 30일 이내의 미납채무가 있을 경우 잔존 채무와 손해배상액과 정산 후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현금)보증금	-	계약체결 후 예치	가맹계약 미이행, 물품대금, 경영지도비 미지급,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잔존채무, 손해배상액등과 정산 후 반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비고
가맹비	11,000	부가세 포함
교육비	22,000	부가세 포함
보증금	-	부가세 없음
합계	33,000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면적 3.3m ² 당	지급 기한	지급 대상	반환조건	비고
인테리어	49,500	1,650	계약체 결과 동시	가맹 본부	미공사시	[30]평 기준 평당 [1,650]천원
					미공급시	제공 후 반환 안됨/ 제 공 전 제공 위해 지불한 구입· 제작 비용 상계처 리 후 반환
총계	49,500	1,650	-		-	-

매장의 형태, 매장 운영형태에 따라 투자금은 변경될 수 있고 인테리어를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가맹본부의 철저한 감리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계 및 감리의 댓가는 없습니다.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비용(도시가스공사, 전기증설, 화장실공사, 닥트공사, 냉난방설비, 수도시설, 돌출 간판공사, 외부공사, 상하수도 유입공사, 소방설비, 음향기기, 철거비용 등)은 총계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	- 가맹본부와 협의 후 가맹희망자가 희망 영업지역 파악 → 현장조사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본부에 통지 - 가맹본부는 유동인구, 교통량, 입지의 특성, 시장의 특성, 구매습관, 근린시설, 업종별특성 등의 상황에 따른 점포선정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다. - 점포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입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 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성년을 원칙으로 함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성년을 원칙으로 함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물품내역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당사는 가맹금 분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정액 1,650천원	익월 5일			정기 납입금
POS사용료	가맹본부	50~100천원	익월 10일	설치 전	실시 후	후불
지연이자	가맹본부	미지급 금액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	-	대금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날까지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0%(가맹본부) 100% (직영점+가 맹점 수로 균분)	2주일 전	실시 전	실시 후
	가맹본부	100%(가맹본부) :0%(가맹점사업자)	-	-	-	가맹점모집광고 시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협의	교육실시 전	실시 전	실시 후	교육필요시 실시
관측 분담금	가맹본부	협의	2주일 전	실시 전	실시 후	관측 시
점포환경개선 비용	자율선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	-	“VII. 가맹본부의 경 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항목 참조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자율선택	협의	협의	실시 전	실시 후	교체비용은 당사 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를 결정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자율선택	협의	협의	실시 전	실시 후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
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직전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
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실제 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분기별 1회	문의: 관리팀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분기별 1회	문의: 관리팀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 포함)하기 위한 재 가맹비는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 ① “갑”이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 “을”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 “을”이 양수한 사업자(새로운 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의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기존의 가맹본부의 사업자 형태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① “갑”이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 “을”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갑”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 ②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해당 가맹사업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가 승인을 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잔여 계약기간 포함)를 포괄승계

하게 되며 양수인은 승낙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본부와 가맹점 포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만일 7일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양수도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을 원할 경우 신규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 보증금,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타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기타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맹계약서 관련 조문 [제36조 (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① “본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된 것으로 보며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을”은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갑”으로부터 부여 받은 제4조 제2항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 및 간판시안과 “갑”만의 고유 익스테리어(외장), 인테리어 등의 영업표지를 영업장, 기타 영업설비로부터 즉시 철거 및 제거하여야 하며, 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을”이 부담한다.
	2. “을”은 계약 종결을 이유로 비품, 소모품, 시설설비 등을 “갑”에게 반품을 청구할 수 없다.
	3.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점포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
	4 “을”은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갑”의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약정한 계약기간 이내에 “을”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 해지 시 “갑”이 “을”에게 계약조건으로 무상 제공한 각종 제반 비용을 “을”은 “갑”에게 반환한다.
가맹계약서 관련 조문 [제37조 (손해의 배상)]	
제36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1항을 위반할 경우 1일당[금삼십만원]을 위약금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당사가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별첨 [판매상품 리스트] 참조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각 메뉴별로 조합하여 판매 가능 함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경쟁업체	※별첨 [판매상품 리스트] 참조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다른 가맹점사업자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첨 [판매상품 리스트] 참조	가맹본부가 권장한 가격	홈페이지에 공지, 유선, 팩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유해피심리상담센터’와 같이 심리상담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업종	유해피심리상담센터	해당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주소 기준으로 반경 [1,000]m ※ 단, 특수상권(백화점, 대형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대형쇼핑몰, 대형 아울렛 등)은 위 설정과는 별도의 영업지역입니다.	-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설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비고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 가맹사업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 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 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 상품 비중
2023	10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해당 첫째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3년이며, 갱신계약 시 갱신단위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 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계약서 관련 조문 [제6조 제2항 (계약기간과 갱신)]
② “갑”은 “을”이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을”이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금전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이나 영업 방침을 “을”이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갑”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을”이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갑”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에 관한 사항 라. “갑”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 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1) 일반적인 해지사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관련 조문 [제35조 제 1항 (계약의 해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갑”은 계약의 위반 사실을 명시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을”에게 2개월의 여유를 두고 2회 이상 통지하여도 시정되지 않으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갑”은 “을”의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상품 공급의 중단 또는 해지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가맹점사업자가 원·부재료, 교육비, 가맹비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4.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영업양도, 승계, 담보제공, 사업자위치변경을 한 경우
 7. 영업상 비밀공개의무 위반이나 경업금지 위반을 한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개량·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11.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원·부재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않거나 품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12.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공방법, 종류(메뉴 등), 판매방법, 서비스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운영하는 경우
 1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운영매뉴얼이나 세부운영규칙을 위반한 경우
 1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2) 즉시 해지사유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관련 조문 [제35조 제 2항 (계약의 해지)]

-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1)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2)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3)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 조건을 수정 사유 발생 시 사전고지 및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양도 2개월 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관리팀

당사가 승인을 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잔여 계약기간 포함)를 포괄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승낙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본부와 가맹점 포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보증금,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7일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양수도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을 원할 경우 신규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 보증금,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본부에 서면통보 → 본부 승인 → 교육 수료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본부가 승인한 권리의무	본부에 서면통보 → 본부 승인 → 교육 수료	
업무위탁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본부가 승인한 권리의무	본부에 서면통보 → 본부 승인 → 교육 수료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국내 지역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존속기간 중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 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와 동종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계약종료 후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 3 자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본사 브랜드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금지되는 경업금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계약서 관련 조문 [제20조 (경업금지 의무)]		
① “을”은 “본 계약“의 존속기간 중에 “갑”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갑”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아니하며,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정보공개서 상의 동일 사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은 계약 종료 후 “갑”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갑”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경업금지 지역
‘유해피심리상담센터’와 같이 심리상담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전국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0:00 ~ 22:00 ※상권에 따라 사전 협의	월 28일(2월은 26일) 이상 영업일 준수	문의: 관리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2명(40평 기준)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 시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분기	본사 관리팀	
친절도	담당자 매장 압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1회/분기	본사 관리팀	
품질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분기	본사 관리팀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본 계약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브랜드이미지 광고 + 상품광고	없음	100% (직영점+가맹점수로 균분)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광고 계획 공고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50% 이상의 동의 시 전체 적용
	가맹점모집광고	100%	없음		
개별 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별도공고)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판촉 행사 계획 공고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 시 전체 적용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촉물제작, 인쇄물제작 등 홍보물, 홍보소모품, 경품 등을 제작 시에는 미리 가맹본부에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맹계약서 관련 조문 [제19조 (비밀유지 의무)]

- ① “갑”은 “을”에게 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이 제공한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이나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어떠한 목적으로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을” 또는 “을”의 직원은 “갑”이 제공하는 노하우 및 운영매뉴얼 기타 이에 준하는 영업비밀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갑”의 허가 없이 인쇄, 복사, 대여, 공개 및 기타 일체의 누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을”은 가족 및 그 직원에 의한 전항의 의무위반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 시 위약금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 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19조(비밀유지의무), 제20조(경업금지 의무) 및 제25조(자점매입금지), 제36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규정을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과 같은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가맹계약서 관련 조문 [제37조 (손해의 배상)]

- ①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과는 별도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본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③ “을”이 제19조(비밀유지의무), 제20조(경업금지 의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갑”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19조(비밀유지의무), 제20조(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금

으로 [금일억원]을 지급 하여야 한다.

- ⑤ 제25조(자점매입금지)를 위반할 경우 [금일천만원]을 위약금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⑥ 귀하가 제 35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반적으로 중단.폐업 처리하거나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별로 [금일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⑦ 제36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1항을 위반할 경우 1일당 [금오십만원]을 위약금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⑧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다음과 같이 ‘본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 에게 다음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계약서 관련 조문 [46조 (가맹계약 해지 위약금 등)]

- ①“을”의 귀책사유로 ‘본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갑’에게 다음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지일	위약금(부가세포함)
계약체결 후 가맹점 오픈 전	지급한 가맹비의 50%

- ② 인테리어, 기기, 시설, 물품공급, 교육 등 이행이 진행된 경우, 제1항 위약금과는 별도의 책임을 진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 방문, 홈페이지	-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참조 바람
상담	- 전화 상담 - 사업내용상담	-	
사업 설명 · 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점포개발 및	- 입지선정	필요시 실시	

상권분석 실시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45	
가맹계약체결	- 가맹계약서 1부씩 교부 보관, 일정협의	D-40	
가맹금 예치	- 당사와 계약된 은행에 가맹금 예치	D-40~3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39~38(1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35(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기기, 물품 입고	D-35~10(25일)	
점포집기, 기기입고	- 점포집기.기기, 초도물품 입고	D-10~5(5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4~1(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	-----------------	-----------------	------	--------------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점의 통일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바잡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해 부담 제외 사유 해당 시	○ 점포 환경 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 (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증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 사항 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 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 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 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 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관리팀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 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 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 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 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 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 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부담 (요청 시 별도 협약)	문의: 관리팀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명 또는 내용	신용제공자	금액	신용 형태	신용제공 조건
프랜 차이즈 보 증 보 험	서울 보증 보험	없음	해당 없음	가맹본부의 가맹점 피해보상보험 가입시

*구체적인 신용제공 조건은 귀하의 신용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 해당없음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개점 전 신규 교육	회사 소개, 점포운영	이론, 실습	개점 전	필수 교육
수시 교육	신 메뉴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이론, 실습	수시	-
특별 교육	필요시 내용 통보	이론, 실습교육	필요시	필요시 실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천원, 부가세포함)	비고
신규 교육	10일	22,000	최초 계약 시 이수
수시 교육	별도계획	필요시 산정	신 메뉴 출시 등
특별 교육	별도계획	필요시 산정	필요시 실시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을 불참할 경우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5조 (계약의 해지)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6조 (계약기간과 갱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업이 거부되거나 보류될 수 있다	제13조 (개점 승인)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	-	-	-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관리팀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판매 상품 리스트

판 매 상 품		
내 용		가 격(원)
상담	심리상담	100,000
	미술치료	100,000
	놀이치료	100,000
	부모훈육상담	100,000
	학습상담	100,000
	부부상담	140,000
	가족상담	180,000
검사	종합심리검사	480,000
	주의력,집중력 검사	200,000
	진로, 학습검사	240,000
	인성검사	140,000
	성격유형검사	140,000

<신설 2008.1.31>

(앞 쪽)

가맹금예치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가맹 본부	상호명(영업표지)	유해피 (유해피 심리상담센터)	
	성명(대표자)	김문식	
	주소(사무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30, 제상가동 제씨2층 제33호(마두동, 강촌마을6단지아파트)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귀하 지점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가맹희망자 인근의 가맹점사업자 현황

* 귀하가 장래에 점포를 개설하고자하는 지역에서 가까이 있는 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가맹점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제공일: 20 년 월 일

[정보공개서 등 수령확인서]

[유해피 심리상담센터]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수령인(가맹희망자)에게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합니다.

성명		전화번호	
주소			

상기 수령인(가맹희망자)은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등을 제공받았다는 사실			
(예시 : 상기인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와 가맹점 인근 현황문서 등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함)			
제공일	20	년 월 일	제공방법

가맹본부 : 유해피 (인) 또는 서명

수령인 : (인) 또는 서명

..... ○ (절취선) ○

[정보공개서 등 수령확인서]

[유해피 심리상담센터]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수령인(가맹희망자)에게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합니다.

성명		전화번호	
주소			

상기 수령인(가맹희망자)은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등을 제공받았다는 사실			
(예시 : 상기인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와 가맹점 인근 현황문서 등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함)			
제공일	20	년 월 일	제공방법

가맹본부 : 유해피 (인) 또는 서명

수령인 : (인) 또는 서명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